

「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」 변경 행정명령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 「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」 변경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

충청북도 공고 제2022-705호(2022. 4. 15.)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.
- 마스크 착용의무와 관련하여 별도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·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.

2022년 4월 29일

충청북도지사

1. 처분당사자

가. 충청북도 도민, 거주자 및 방문자

나.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, 운영자, 종사자 및 이용자

2. 처분내용 : 마스크 착용 의무

가. 실내

- 건축물,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, 버스·택시·기차 등 운송수단

나. 실외에서 50인 이상 ①집회 참석, ②공연 관람, ③스포츠 경기 관람

3. 처분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가. 감염병 예방 조치: 제49조제1항(제2호, 제2호의2 ~ 제2호의4) 및 제3항

나. 벌칙 및 과태료: 제80조제7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4. 처분사유: 충청북도 내 코로나19 유행 양상, 감염병 통제 범위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

5. 처분기간: 2022. 5. 2.(월) 00:00 ~ 별도 명령 시까지

6. 처분효력 발생일: 2022. 5. 2.(월) 00:00부터

7. 처분서 교부요청: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8. 불복구제: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9. 위반 시 제재: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·조사·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10.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,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업소의 운영 중단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됩니다.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 제1항 [별표 10]

위반사항	근거 법 조문	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	2차	3차	4차 이상	5차 이상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가호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